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4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서왕진・김준형・조 국

김재원 · 이해민 · 강경숙

박은정 · 차규근 · 김성환

김선민 · 신장식 · 황운하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 증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사업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 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 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 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 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		
	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		
	<u>정을 설치할 수 있다.</u>		